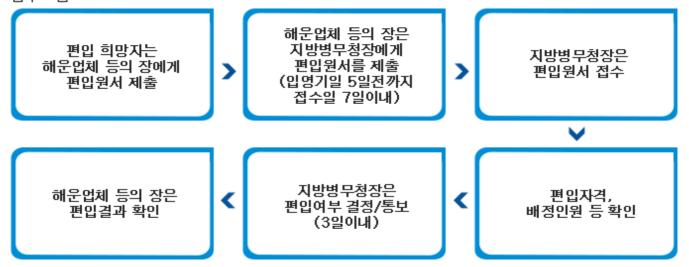
24. 12. 16. 오후 2:23 인쇄

# 편입

5	개요	인원배정	편입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군사교육소집				

# 편입

### 업무흐름도



#### 편입대상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중에서 해운업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과정(해군에 한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마친사람

## 제출서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승선근무예비역 성실근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별첨 다운로드 미리보기